

타지키스탄(Tajikistan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93년(연금) 및 1999년(맞춤형 계좌제도 및 개인계좌)
- 현행법 : 1997년(사회보험); 2010년(보험 및 국가연금), 2013년 시행

2 제도형태

- 명목확정기여(NDC), 의무개인계좌, 및 사회부조제도

3 적용대상

- 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 : 근로자 및 자영자
 - 군인을 위한 특별제도
- 사회부조 : 근로자 및 자영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 : 명목확정기여(NDC)계좌로는 없음; 의무개인계좌에 소득의 1%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 : 명목확정기여(NDC)계좌로 신고소득의 20%; 의무개인계좌에 대한 정보 알 수 없음
 - 자영자 보험료 납부금액은 실업 급여와 가족수당 재원으로 사용
 - 사회부조 : 명목확정기여(NDC)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가 사회부조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- 사용자
 - 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 : 명목확정기여(NDC)계좌로 임금지급액의 25%; 의무개인계좌로는 없음
 -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은 질병 및 출산 급여, 실업 급여, 가족 수당의 재원으로 사용
 - 사회부조 : 명목확정기여(NDC)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가 사회부조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
○ 정부

- 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 : 없음; 사용자로서 기여함
- 사회부조 : 부분 보조금 제공함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 계좌) : 보험적용 근로기간 최소 25년 이상의 63세(남성) 또는 보험적용 근로기간 최소 20년 이상의 58세(여성). 완전한 연금을 지급받기에 요구되는 연령과 보험적용 근로기간 년 수는 5명 이상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모(母)와 외진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감소됨
 - 부분연금 : 노령연금 연령 조건을 충족하며 5년 이상 25년 미만(남성) 또는 20년 미만(여성)의 보험적용 근로기간
 - 연기연금 : 연금은 일반퇴직연령 10년 후까지 연기될 수 있음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63세(남성) 또는 58세(여성)이며 노령연금 보험적용 근로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(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)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) : 보험적용 근로기간 최소 60개월 이상의 그룹Ⅰ(완전한 장애, 어떠한 근로도 불가, 상시간병을 요구함), 그룹Ⅱ(장애인이며, 축소된 근로능력, 때때로 간병을 요구함), 또는 그룹Ⅲ(장애인이며 축소된 근로능력을 가짐) 장애인으로 판정되어야 함
 - 노동사회보장부 하의 지역 또는 국가 의료 서비스가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판정함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그룹Ⅰ(완전한 장애, 어떠한 근로도 불가, 상시간병을 요구함), 그룹Ⅱ(장애인이며, 축소된 근로능력, 때때로 간병을 요구함), 또는 그룹Ⅲ(장애인이며 축소된 근로능력을 가짐) 장애인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보험적용 근로기간 60개월 미만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) : 수급자격이 있는 생존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58세 이상의 미망인으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자, 학업 중일 시 23세까지의 자녀 및 손주(18세 이전에 장애 발생 시 제한 없음), 및 14세까지의 사망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
- 고아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18세 미만의 고아(학생일 시 23세)에게 지급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 계좌) : 월 연금액은 명목확정기여(NDC) 급여와 의무개인계좌급여로 구성
- 명목확정기여(NDC) 급여 : 급여는 <명목기여금 합계총액 ÷ 퇴직 후 예상되는 환급 기간>에 근거함
 - 명목 보험료의 총 가치는 1999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 년 수와 1999년 1월 1일로부터 보험료 납부금의 가치에 근거함
 - 예상되는 환급 기간은 180개월
- 의무개인계좌급여 : 급여는 <가입자 보험료 납부금 + 경과이자>에 근거함. 만약 퇴직 시 총 계좌 잔고가 최소 월 노령연금액의 10배보다 적다면, 의무개인계좌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
 - 최소 월 노령연금은 180 somoni(2018년 8월)
 - 최고 월 노령연금은 850 somoni(2018년 8월)
 - 부분연금 : 완전한 연금 수급에 요구되는 보험적용 근로기간보다 적은 각 년 수마다 연금 감액
 - 연기연금 : 연금은 연기되는 각 년마다 1%씩 최대 10%까지 증가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최소 월 노령연금의 60%가 지급
 - 월 최소 노령연금은 180 somoni(2018년 8월)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 및 의무개인계좌) : 월 장애연금은 그룹 I 장애인의 노령연금 명목확정기여 요소와 동일하게 산정됨, 그룹II장애인에게는 그 금액의 85%, 그룹III장애인에게는 그 금액의 70%. 일반퇴직연령 도달 이후부터는 의무개인계좌 급여 또한 <가입자 보험료 납부금 + 경과이자>에 근거하여 지급
 - 월 최소 장애연금은 그룹 I 장애인의 월 최소노령연금액이며, 그룹II장애인에게는 그 금액의 85%, 그룹III장애인에게는 그 금액의 70%
 - 월 최소 노령연금은 180 somoni(2018년 8월)
 - 급여조정 :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급여는 매년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최소 노령연금의 최소 100%가 매월 어릴 때부터 그룹 I 또는 그룹II장애인이었던 자에게 지급되며, 18세부터 그룹II장애인 또는 그룹III장애인이었다면 60%
 - 월 최소 노령연금은 180 somoni(2018년 8월)
 - 급여조정 :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급여는 매년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 계좌)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명목확정기여(NDC) 요소가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사이에 나누어짐
- 고아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최소 노령연금의 60%가 한 명의 고아에게 지급(완전한 고아라면 100%), 두 명의 고아에게는 90%(완전한 고아라면 150%), 세 명 이상의 고아에게는 120%(완전한 고아라면 200%)가 지급
 - 월 최소 노령연금은 180 somoni(2018년 8월)
 - 급여조정 : 생활비 변동에 근거하여 매년 급여조정

7

관리운영기관

- 노동이민고용부(Ministry of Labor, Migration, and Employment of the Population)
 - <http://www.mehnat.tj/>
 - 전반적인 조율과 감독 제공
- 국가 사회보험 및 연금기구(State Social Insurance and Pensions Agency)과 지역 공동체
 - <http://nafaka.tj/>
 - 지방 정부 당국과 함께 제도 관리
- 국가세금위원회(State Tax Committee)
 - <https://andoz.tj>
 -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